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조치(제59조관련)

기타 수질오염원의 구분		시설설치 등의 조치
1.수산물 양식시설	가. 가두리 양식어장	(1) 사료를 준 후 2시간 경과한 때 침전되는 양이 10% 미만인 부상(浮上)사료를 사용한다. 다만, 10cm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種苗)에 대한 사료는 제외한다. (2) 「사료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사료공정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상사료 유실방지대를 수표면 상·하로 각각 10cm 이상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분뇨를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변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호소에 재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양만장 및 일반양어장	(1) 시료찌꺼기·배설물 그 밖의 슬러지 등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면적이 사육시설면적의 20% 이상이고 깊이가 1m 내지 1.5m인 침전시설(배출수가 1.5시간 이상 체류할 수 있는 경우는 깊이는 1m 이하로 할 수 있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효율이 있는 것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양식수조를 청소하거나 양식에 사용되는 기계·기구류를 세척하는 때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은 (1)의 침전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거나 별도의 침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양식수조를 청소할 경우에는 청소주기 및 연간 청소 횟수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4) (1) 또는 (2)에 따라 설치된 침전시설에 가라앉은 침전물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침전물이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목(細目)여과망·모래여과상 등의 여과시설 또는 침전물 탈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죽은 물고기는 지체 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어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항생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조식 양식어업 시설	나목에 정한 조치의 내용과 같다.
2. 골프장		골프장 안에 초기 빗물 5 mm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조정지(調整池)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3조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고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협의내용에 따라 조정지에 갈음하는 초기 빗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 시설		(1) 정비가 이루어지는 장소 또는 폐차시 엔진부분을 취급하는 장소는 가능한 한 지붕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부득이하게 지붕시설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을 방수처리하여 오염물질이 지하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3) 바닥에 유출된 기름류는 가능한 한 흡착제 등으로 흡착·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3)의 방법에 따른 처리가 어려워 물로 청소하거나 작업장 바닥을 물로 청소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강우시 작업장바닥의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침전시설의 규모는 5mm 강우시 실제 작업을 행하는 모든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초기 강우량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하고 유수분리기의 성능은 배출수의 노말핵산추출물을 30mg/L 이하로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다만, 작업장 전체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고 물로 청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침전시설 및 유수분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침전시설에 침전되는 침전물은 바닥에서 2cm 이상 퇴적되기 전에 이를 제거하여 2차 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4.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1) 수면 위의 부유물질을 제거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2) 침전물은 침전시설을 설치하여 침전처리하여야 하고, 이 때 침전물이 재차 부유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3) 염분 등으로 타인에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진처리, X-Ray시설, 금은판매점의 세공시설 및 안경점	(1) 별표 1 제5호 가목 또는 제6호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거나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별표 1 제5호 나목 또는 제6호 가목의 경우에는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에 폐수의 수거·보관·처리 및 수거용기의 표기에 관하여는 별표 10 제2호 라목을 준용한다. (3) 폐수의 발생량·처리량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은 이를 기록하되, 최종 기재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비고 : 1. 양만장, 일반양어장, 수조식 양식어업시설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배출수의 수질기준을 정하고, 별도의 시설 또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2. 산업단지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된 기타 수질오염원의 경우에는 그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3. 하나의 사업장에 배출시설과 기타 수질오염원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서 기타 수질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다.